

의안 번호	2046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9.(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12. 9.(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12. 16.(금)

2.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새로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균형 있는 기구 설치 및 인력수급 적정성 유지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계획기간 : 2023년 ~ 2027년(5년)
- 기본방향
 - 새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
 - 기준인건비 준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년) 연동
 - 민선8기 출범 등 행정여건 변화 및 행정수요 고려
 -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연차별(2023~2027년) 탄력적 인력 운영

○ 기구조정 및 계획정원

○ 기구 조정: 증 과2, 증 담당6

○ 공무원 정원: 증 53명

(`23년 증28, `24년 증11, `25년 증2, `26년 증9, `27년 증3)

4.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

2023년 : 증 1과, 증 9담당, 증 50명 / 감 4담당, 감 22명

① 기획예산실 : 감 1담당, 감 6명

○ 홍보업무 부서이관에 따른 인력 감원

(행정6급 1, 행정7급 1, 행정(임기)7급 2, 행정8급 1, 전산8급 1)

② 지역경제과 : 증 1명

○ 청년 특성 야시장 조성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7급 1)

③ 교육지원과 : 증 1담당, 증 9명

○ 체육시설물 조성 등 체육시설계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6급 1, 행정8급 1)

○ 중부도서관 개관 및 운영 준비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6급 1, 사서7급 2, 전산7급 1, 사서8급 1, 공업8급 1)

○ 마을교육 및 미래교육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임기)8급 1)

④ 총무과 : 증 1담당, 증 2명 / 감 1담당, 감 5명

○ 노사복지계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6급 1, 행정7급 1)

○ 정보관리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감원 (전산6급 1, 전산7급2, 전산8급2)

⑤ 회계과 : 증 1명

○ 청사신축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8급 1)

⑥ 세무1과 : 증 1명

-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 (세무8급 1)
- ⑦ 민원지적과 : 증 1명 / 감 3명
 - 무인항공 활용 및 공간빅데이터 분석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시설(임기)7급 1)
 - 방문민원 처리 감소로 인한 인력 감원 (행정7급 1)
 - 공간정보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감원 (시설7급 1, 시설(임기)7급 1)
- ⑧ 홍보과(신설) : 증 1과, 증 5담당, 증 23명
 - 홍보과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2, 행정(임기)7급 2, 행정8급 2, 시설6급 1, 시설(임기)7급 1, 시설8급 1, 전산6급 1, 전산7급 2, 전산8급 4, 방송통신6급 1, 방송통신7급 1, 방송통신8급 2)
- ⑨ 노인장애인과 : 증 2명
 -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7급 1)
 - 장기요양기관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사회복지8급 1)
- ⑩ 가족복지과 : 감 1명
 - 아동학대 신고건수 감소에 따른 인력 감원 (사회복지8급 1)
- ⑪ 환경위생과 : 증 1명
 - 위생업소 경영활성화 지원에 따른 인력 증원 (보건8급 1)
- ⑫ 안전총괄과 : 감 4명
 -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감원 (시설7급 2)
 - 정보통신업무 일부이관에 따른 인력 감원 (방송통신7급 1, 방송통신8급 1)
- ⑬ 건설과 : 증 2담당, 증 5명 / 감 1담당, 감 1명
 - 노점상 업무 통합을 위한 가로환경계 폐지에 따른 인력 감원 (행정6급 1)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업무이관으로 인력 증원 (시설6급 1, 시설7급 2)

- 치수계 분리에 따른 인력 증원 (시설6급 1)
- 농업기반시설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증원 (시설7급 1)

⑭ 도시과 : 감 1담당, 감 1명

- 도시재생계 통합에 따른 인력 감원 (시설6급 1)

⑮ 교통과 : 감 1명

- 공영주차장 업무감소에 따른 인력 감원 (행정8급 1)

⑯ 의회사무국 : 증 4명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 (행정(임기)7급 3)
- 주민조례청구 및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8급 1)

2024년 : 증 1과, 증 4담당, 증 27명 / 감 4담당, 감 16명

① 일자리정책과 : 감 1담당, 감 1명

- 일자리지원계 폐지에 따른 인력 감원 (행정6급 1)

② 문화관광과 : 감 1담당, 감 1명

- 한글도시계 폐지에 따른 인력 감원 (행정6급 1)

③ 교육지원과 : 증 1명 / 감1담당, 감 12명

- 평생학습 특화사업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임기)8급 1)
- 도서관과 신설에 따른 도서관 담당 폐지 및 인력 감원

(행정6급 2, 행정7급 1, 사서7급 3, 전산7급 1, 공업8급 1, 사서8급 2, 행정8급 1, 사서9급 1)

④ 도서관과(신설) : 증 1과, 증 3담당, 증 18명

- 도서관과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5급 1, 행정6급 3, 행정7급 1, 사서7급 3, 행정8급 2, 사서8급 3, 전산7급 1, 공업8급 1, 행정9급 2, 사서9급 1)

⑤ 총무과 : 증 1명

- 공공데이터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 (전산7급 1)

⑥ 세무2과 : 증 1명

- 통합기동징수 업무 강화에 따른 인력 증원 (세무8급 1)

⑦ 복지지원과 : 증 1담당, 증 1명

- 통합조사계 분리에 따른 인력 증원 (사회복지6급 1)

⑧ 가족복지과 : 증 1명 / 감 1담당, 감 1명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력 증원 (사회복지8급 1)
- 청소년계 통합에 따른 인력 감원 (행정6급 1)

⑨ 환경위생과 : 증 1명

- 위생업소 경영활성화 지원에 따른 인력 증원 (보건8급 1)

⑩ 환경미화과 : 감 1명

- 생활쓰레기 민원업무 감소에 따른 인력 감원 (행정8급 1)

⑪ 공원녹지과 : 증 1명

- 정원시설물 및 마을정원사 관리에 따른 인력 증원 (녹지7급 1)

⑫ 시설지원과 : 증 1명

- 통신공사 감독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방송통신7급 1)

⑬ 동행정복지센터 : 증 1명

- (우정)지역주택조합사업 완료로 인구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8급 1)

2025년 : 증 5명 / 감 3명

① 회계과 : 증 1명

-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8급 1)

② 세무1과 : 증 1명

- 자동차세 연납 및 비과세·감면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 (세무7급 1)

③ 도시과 : 증 1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인력 증원 (시설7급 1)

④ 건축과 : 증 1명

○ 경관개선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인력 증원 (시설8급 1)

⑤ 건강관리과 : 감 3명

○ 코로나19 업무 감소에 따른 인력 감원 (간호(임기)6급 1, 간호7급 1, 간호8급 1)

⑥ 문화의전당 : 증 1명

○ 음악창작소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임기)7급 1)

2026년 : 증 2담당, 증 11명 / 감 1담당, 감 2명

① 세무1과 : 증 1명

○ 취득세(차량) 자진신고 업무에 따른 인력 증원 (세무7급 1)

② 건설과 : 감 1담당, 감 1명

○ 방재복구계 폐지에 따른 인력 감원 (시설6급 1)

③ 교통과 : 증 1담당, 증 4명

○ 자동차등록 업무 이양에 따른 차량등록계 신설 및 인력 증원 (행정6급 1, 행정7급 1, 행정8급 1, 행정9급 1)

④ 건축과 : 증1담당, 증 4명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따른 건축안전계 신설 및 인력 증원 (시설6급 1, 행정(임기)6급 2, 시설7급 1)

⑤ 보건과 : 증 1명

○ 치매안심센터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 (간호7급 1)

⑥ 건강관리과 : 감 1명

○ 코로나19 업무 감소에 따른 인력 감원 (간호7급 1)

⑦ 문화의전당 : 증 1명

○ 음악창작소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임기)8급 1)

2027년 : 증 3명

① 문화관광과 : 증 1명

○ 체계적인 문화재 운영 및 시설관리에 따른 인력 증원 (행정8급 1)

② 세무1과 : 증 1명

○ 혁신도시 등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세무7급 1)

③ 환경위생과 : 중 1명

- 위생 안전관리에 따른 인력 증원 (보건7급 1)

5. 근거 법규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6. 검토 의견

- 본 계획안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운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

근 거 법 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